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199,481,703	35,984,451
일반회계	1,152,869,756	34,586,093
특별회계	46,611,947	1,398,358
기타특별회계	46,611,947	1,398,358
상수도	42,234,153	1,267,025
의료급여기금	3,330,779	99,923
자활기금	517,566	15,527
주민소득지원기금	423,412	12,702
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	106,037	3,18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137,23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.